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용적 가치 (완)



정 언 응

특허청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

목 차

- I. 부당이득의 형태와 연혁
- 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III.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 IV. 불법원인 급여
- V. 무체재산권과 부당이득
- VI. 결론

<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認定

가. 學說

1) Wilburg의 설

Wilburg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에 대하여 급부의 이득과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이득(비급부이득)으로 나눈다. 전자는 급부의 기초가 되는 채권관계를 법률상 원인이라하여 그 체계내로 유입하고, 이러한 기초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고, 후자는 가령 물건이 물권적 힘은 없더라도 그 할당내용(Zweisuengehalt)에 기해 그 물건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의 연장으로서 취득한다. 이 대상권(Ersatzrecht)의 기초는 소유권이고 그것은 소유권 보호의 하나의 전개내용의 것이다. 즉 이것이 비급부이득으로서 반환청구의 근거가 된다. 또한 기타의 절대권이나 무체재산권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반환청구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자는 급부된 것의 반환 또는 그 대가의 지급이며, 후자는 권리의 연장으로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있는 일체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결정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의 이원화와 무관하게 청구권의 정도라는 문제를 제시한다³⁸⁾.

2) Von Caemmerer설

Von Caemmerer의 견해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용 또는 멸실시킨 자는 소유권 내용의 귀속적 성질에 의한 내용상 본래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자의 재화귀속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이득을 본래 소유권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득반환 청구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山村泰啓은 부당이득유형의 구별은 간단히 소유권세계와 계약(즉 채권)의 세계간 준별이라고 하는 상품교환의 법적 논리위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山村교수는 소유권세계는 all or nothing의 사상에서, 계약의 세계는 give and take의 사상에서 유래한다고 구별한다.

또한, 일본의 好美清光은 종래의 주장인 山村泰啓과 鈴木祿彌의 부당이득론과 대등소이하며, 다만 종래의 공평설과는 다른 구체적인 유형론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유형을 급부부당이득과 비급부부당이득으로 나누고, 전자는 쌍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구분하고, 후자는 침해이득, 지출이득, 제3자수령이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³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급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독일 민법상의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의 경우에 급부 자체의 반환청구가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화에서 얻은 이득의 반환이 문제가 된다.

특허권자는 逸失利益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두 방법중 침해자가 얻은 이

득의 반환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 보다는 침해자가 취득한 것은 특허대상인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인 가치로서 특허권자들의 권리자에게 귀속될 재화의 내용에 따른 이득이므로 반환청구를 통해 본래의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법리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에는 특허권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침해자 자신의 활동에 의해 얻어진 수익을 포함될 수도 있다. 결국 침해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는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시계약에 더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Ullmann의 설

무체재산권은 그 권리를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특허권에 대한 타인의 이용여부는 오직 특허권자의 결정에 의한다. 만일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였다면, 소유권자에게 보장된 재화귀속의 배타적인 권리보호와 같은 특허권자의 법적 지위를 침해한 것이다. 특허권은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침해자에 의한 보호권의 침해후에도 보호권리를 특허권자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된다. 이때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재화에서 이익을 얻고, 소유권자는 비록 권리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나,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의 타인(특허권자)의 재화로부터 얻은 수익은 특허권자의 결정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며, 일반 재산권인 유체재산물과 구별된다. 무체재산권의 이용은 동시에 복수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

38) 사용이익(Gewinn)은 일반적으로 이득자의 수단, 노동 및 기업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타인의 재화에 의한 생산물은 자기의 재산을 사용한 성과이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이득자도 또한 사용이익 위에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용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한다. 또한 Wilburg는 청구권의 정도의 문제에도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다. 즉 이득자와 손실자의 기여의 가치에 따른 성과의 비례적 분배 및 보충적으로 적절한 대가에 의한 균형을 기준으로 든다; 이태환,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8. 24-25면.

39) 高森入四郎, 現代契約の現代價權の展望 契約①—一般的課題, 1990.12.25, (株)日本評論社, 169-170.



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권리 객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재량으로 그 재화이용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을 문제삼을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보호권의 침해자는 그 이용에 대한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의 악의 없는 권능은 보호권자의 재산에서 연유하는 것이지 그 침해로부터 얻어진 이익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재산은 어떤 무형의 발명으로서 이용권능의 재산적 가치는 독일 민법 제818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될 수 있고, 이 가치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체재산권에 있어서 침해의 형태가 일반재산권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나. 부당이득법리의 認定 根據

특허권·실용신안권내 부당이득법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네가지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귀책사유없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독일 민법 제812조 이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법체계 및 논리상 이론이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30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 만일 손해배상에 기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부당이득법리에 기해 이득반환청구만이 가능하다.

②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법리는 상호 다르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부당이득법리에 기한 이득반환청구는 침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침해자의 재산상태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부당이득은 이득에 한정된 반환청구만 가능하다. 특허법상 부당이득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과 이득반환간 법리적용에 있어서 관련이 없다.

③ 라이히법원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한정하여 특별히 제한된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논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기 손해배상은 고의의 민사사유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좁게 규정된 것이었으므로 輕過失까지 확장하여 통상의 귀책사유로 개정되었다.

④ 이득반환청구권의 남용을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실무태도에 기한 법정책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 실질적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특허권자의 이익만을 구하기 위하여 이득반환청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의 실익은 없다.

3. 利得返還의 學說 및 範圍

특허권자는 부당이득법리에 기한 이득반환청구를 위하여 침해자의 이득반환의 범위인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득반환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침해자가 수익 자체를 반환하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된 이익액을 반환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 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수익 자체를 반환한다는 설에 의하면 침해자 수익의 반환과 일치하며, 객관적으로 평가된 이익액을 반환한다는 설에 의하면 통상 실시계약에 있어서의 실시료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가. 學說

1) 主觀說

권리자 재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익인 침해자수익을 반환 청구의 범위로 삼는다. 이 학설은 우리 민법 제741조에 해당되고 독일 민법 제818조 제1항에 규정한 취득한 수익을 반환케 함으로써 원물반환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익개념이 주관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부당이득법리에 있어서 침해자에게 이득을 보유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밝히고 있다. 이는 원물이 멸실·훼손등으로 代價物의 返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액반환을 정한 다음의 객관설과 구별된다.

2) 客觀說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타인의 무체재산권의 사용 자체를 말하기에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평가한 가액반환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우리 민법 제747조 제1항에 해당되고 독일 민법제818조 제2항에 의한 반환은 타인의 무체재산권의 사용을 반환목적물의 성질상 직접 반환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즉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 정당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가치⁴⁰⁾에 따른다. 타인의 무체재산권의 사용에 의해 얻은 실제 침해자수익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실시료상당액을 중심으로 반환범위를 정함으로써 손해배상에 있어서 최소한 배상액을 정하는 실시료상당액의 손해배상액과 실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실시료상당액을 유추적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득반환법리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범위가 시장가치에 의해 정하여진 결과가 실시료상당액과 같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독일민법의 입법자는 가액반환과 제816조의 반환범위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무시하고 특별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친 결과, 독일채무법상 부당이득법보다 급부장애법에서의 채무자의 책임범위가 넓게 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독일부당이득법상 핵심적인 논쟁의 하나인 시장가액을 넘는 초과이득의 반환책임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⁴¹⁾.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그 실용신안권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서 처음부터 그 실용신안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므로 그 이전에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⁴²⁾.

발명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사건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당시 원고에 의해 생산하던 반달표진공보온도시락 마개는 피고가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물품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원고의 위 물품제조행위는 피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온도시락 마개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시중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파기, 일간신문 4대지에 공개사과문을 실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백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상기 실용신안은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실용신안의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실용신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바 없어 그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 5백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 5백만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5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 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이것은 무체재산권 특허 발명에 대해 부당이득청

40)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은 공급자인 특허권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량을 조절함으로써 결정되며, 수익은 총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다. 따라서 독점적인 시장지배에 대한 제3자의 특허물품의 판매 등은 독점지배력에 대한 간섭으로 특허법상 특허권침해를 구성하게 되고,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 특허권자 이외의 시장지배 또는 시장진입은 차단되고, 시장에서 특허물품에 대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력, 특허물품 이외의 대체재가 있느냐의 여부 등은 특허권침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기초는 市場獨占的 利點에 연결된 誘引(incentive)과 公關에 의한 情報公有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배대현, 앞의 책, 63-69면.

41) 안법영, 앞의 책, 259-261면 상단. 그 반환범위의 결정에 대한 주요한 논쟁은 다음의 세가지로 예로 들 수 있다. i)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가정적 인과관계의 비교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것의 반환한다. ii) 객관적 시장가격에 의한다. iii) 처분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으 가치로서 결정한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객관적 시장가격이며, 이보다 높은 수익금으로 얻은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귀착된다.

4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6. 선고86가단4901판결:확정.



구를 인정한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으나, 일반민사 사건의 결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3) 加重責任說(惡意의 경우)

독일민법 제818조 제1항은 부당이득반환채무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기초를 형성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원물을 특별한 계약에 의해 처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조 제2항은 단지 취득한 것의 가치만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선의의 부당이득반환채무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악의의 부당이득자에 대한 강화된 반환의무를 정한 것인데, 사실상 얻은 수익을 반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그 과실로서 취득하지 못한 수익(이자까지)도 배상해야 하며⁴³⁾, 그 過責으로 인하여 이득의 대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도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7조에 따라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⁴⁴⁾. 결과적으로 독일연방법원은 악의의 부당이득권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민법 제281조를 적용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반환해야 할 목적물의 양도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흠결된 권한을 알고 있는 반환의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보다 책임을 적게 부담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⁴⁵⁾.

나. 國內外 判例 考察

무체재산권에 있어서 권리 보호의 객체는 배타적

인 사용권능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의한 수익자는 민법상 권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능을 침해한 것이다. 부당이득자는 획득한 것, 즉 특허권의 사용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민법 제 8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의 객관적 거래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무체재산권의 객관적 거래가치는 적정 실시료만으로 가능하다. 즉 객관적 거래가치는 침해자 수익의 반환을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반환은 적정한 실시료를 모색함으로써 독일 민법제 818조 제1항에 기한 침해자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무체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독일민법제818조제2항에 따라 객관적 거래가치인 적정한 실시료에 한정하고 침해자 수익의 반환을 배척하였다. 타인의 특허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가 적정한 실시료 이상이 수익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자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시내용에 근거하여 부당사용의 객관적 거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하며, 적정한 실시료 이상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침해자는 제3자의 부당사용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얻지 못했던 수익을 반환하고 부당이득자 개인의 노력과 수완에 의해 얻어진 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대판1994. 12.9. 93다 50321)를 살펴보면, 원고가 신데렐라의 주제곡을 작곡하였고 초연당시 금3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는 장소를 옮겨, 타 소극장에서 8회공연을 한 것을 비롯하여 함께 310회에 걸쳐 이 사건 주제곡을

43) 안법영, 앞의 책, 277면 각주 187.

44) ...원심이 실시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가 물건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의 특정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의 변론종결당시 과연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가 어느 범위내에서 이행이 가능하고 어느 범위내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판1980. 12.9. 80다1840)만일 피고가 반환하지 못한 물품 중 이미 멸실된 것이 있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멸실되기까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와 멸실된 당시의 시가상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멸실된 날 이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의 손해를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일 것이다... (대판1990. 10.16. 90다20210)

45) 안법영, 앞의 책, 273-274면.

이용하여 신데렐라를 공연한 사실, 피고는 1차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사용하고서 6차공연시에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사용료 내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한 위 작곡료는 위 민중극단이 음악극의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하여 그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향후 상당기간내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1차공연은 초연후 불과 3일후에 장소만 옮겨 재공연된 것으로서 초연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초연시 지급받은 이 작곡료 금 300,000원에는 최소한 위1차공연시 사용될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2차 내지 6차 재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달리 이 사건의 주제곡의 저작료 내지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제곡을 위1차내지 6차공연시 선의, 무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은 옳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판결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즉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 정당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가치에 따른 상기에서 전술된 客觀說과 우리 판례는 맥을 같이 하여 부당사용의 객관적 거래가치까지만을 반환함을 알 수 있다.

V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은 다른 규정에서 생기는 결과가 형식적으로 정당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적으로 사람은 정당한 자기 몫만을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실천을 위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법을 존중하는 자만이 법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인 영미법의 크린핸즈의 원칙(He who comes into equity must come with clean hands)과 같은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리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그 목적이나, 부당이득은 수익자의 이득반환에 그 목적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을 그 요건으로 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익자에게 이들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된 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나 일반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으므로 이때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설사 부당이득자 일지라도, 부당이득자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나 우리 법원의 결정이나 객관설에 입각하여 부당사용의 객관적 거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하며, 적정한 실시로 이상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침해자는 제3자의 부당사용으로 인하여 권리가 얼지 못했던 수익을 반환하고 부당이득자 개인의 노력과 수완에 의해 얻어진 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권리침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다르며,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큰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기술을 수출하기보다는 도입하는 입장의 나라에서 보면, 이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발특9910